

제2023-14회  
(정기회)

#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중 앙 집 행 위 원 회

**일 시** 2023. 6. 26. 21:00

**장 소** 원격영상회의 (회의 참가 링크: <https://kaist.zoom.us/j/85656194719?pwd=Z3dMcEhXWEhQRTE4bElwQ0cyMEVoUT09>)

**의사 일정** 보고안건 제1호 / 보고안건 제2호 / 보고안건 제3호 / 보고안건 제4호 / 보고안건 제5호 / 보고안건 제6호 / 보고안건 제7호 / 심의안건 제1호 / 심의안건 제2호 / 심의안건 제3호 / 심의안건 제4호 / 심의안건 제5호

**부의 안건**

-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운영 보고
- 보고안건 제4호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 보고안건 제5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
- 보고안건 제6호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출 보고
- 보고안건 제7호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보고
- 심의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심의안건 제2호 새내기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심의안건 제3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
- 심의안건 제4호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발의안
- 심의안건 제5호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안

##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일시 2023. 6. 26. 21:04  
정회 일시 2023. 6. 26. 22:11  
속회 일시 2023. 6. 26. 22:25  
폐회 일시 2023. 6. 27. 24:19

---

### ○개회 시 출석 중앙운영위원(15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헌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 ○결석·지각·조퇴 중앙운영위원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결석)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결석)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운(결석)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결석) /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지각)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지각) /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조퇴)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조퇴)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조퇴)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조퇴)

### ○서기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

### ○산하 위원회 측 참석자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준한

# 의 사

(21:04 개회)

○의장 한정현: 네 예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석한 위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Zoom 참가자 명을 소속 직책 이름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일 회의는 제2023-14회 중앙운영위원회이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2월까지, 제2023-5회 중앙운영위원회까지,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한 이후로 거의 몇 개월 만인데요. 오랜만에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하는 만큼 그동안 대면 회의로 진행하면서 생략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회의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명은 소속 직책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의 제안설명 등을 위해 참관하신 참관 위원께서는 소속 직책 이름 앞에 참관 태그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중앙운영위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대리 및 참관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중앙운영위원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사전에 배부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의중 발언권은 채팅이나 Zoom의 손 들기 기능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건의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과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심의안건 또는 인준안건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일 회의 회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사무국장께서는 성원을 점검하여 간사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사무국장께서는 완료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도 음성이나 화면이 잘 송출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간사께서는 성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섭: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석 중앙

운영위원 21명 중 15명 재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재 시각 21시 04분 제2023-14회 중앙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7건의 보고안건과 5건의 심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안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위키 및 ARA 업로드한 소집 공고에서도 안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학우들께 송출됩니다. (의장 인사 생략)

○의장 한정현: 보고사항입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섭: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23-13회 중앙운영위원회 결과입니다. 2023년 5월 29일 21시에 개최하였고 창의학습관 터만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를 원안대로 접수하였습니다. 보고안건 제2호도 원안대로 접수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제5호는 부결하였습니다. 새내기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부결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제6호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인준안건 제1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제출된 안건과 발의된 안건에 관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다음으로 의사 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소집공고에 부의된 안건 순서대로, 보고안건과 심의안건 순서대로 각각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제출된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를 없었으며 현장에서 의사일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위원이 있다면 지금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의사일정은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보고안건 및 심의안건을 각각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일 회의에서 다루는 보고안건과 심의안건들의 내용이 많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보고안건 제7호까지 심의를 한 후에 잠시 휴회를 하였다가 심의안건 1호부터 심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실제로 회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피로나 아니면 회의 운영상에 필요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중간에 필요할 경우 휴회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1.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의장 한정현: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학생회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총학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학부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낭독) 해당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결정된 액션 아이템들은 없으나, 총장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합의한 부분은 해당 회의를 지금 올해 처음 개최하였고 이전에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과 그리고 식당에 전달할 수 있도록 회의를 다시 한 번 열어서 가을 학기 개강 전에 다시 한 번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낭독)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학생회장단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제4차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회의에 5번 내용의 타슈스테이션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타슈스테이션은 이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전동 킥보드 뿐만 아니라 학생분들께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여서 총학생회에서 이전에 해당 회의에서 요청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안전팀에서 대전시와 이와 관련한 논의를 그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대전시에서는 타슈의 자전거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고 이 자전거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스테이션도 추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 설치 할 때 카이스트라는 곳에 지금 현재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10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10개가 확정되는 바는 아니고 최대 10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해당 사항 전달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총학생회장단 보고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네, 별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1호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 2.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58조제2항, 제80조제5항, 제91조제3항, 제101조제2항 및 제117조제2항에 따라 각 단위에서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각 단위의 기구장께서는 운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운영 보고 사전에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27개 단위에서 보고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단위별로 발언 시간은 3분 이내로 정하겠습니다. 또한 발언 순서는 본 표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단위가 아니

어서 금일 회의에 참관하지 않은 단위의 경우에는 제가 주요 내용만 대리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단위의 보고가 끝나면 제가 별도로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다음 단위에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중앙집행위원회부터 보고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학부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여기 표 안에 내용란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크게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였는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낭독)

이 중 기출문제 공유를 위한 영상물 제작 후 전체학과장회의 발표에 관해서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내용에 안내드린 바가 전부이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총학생회에서는 학교 측에 꾸준히 기출문제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첫화사 간담회 그리고 교무처장 회의 그리고 학생처장 회의 등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 그 논의 결과로서 6월 학과장회의에서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그동안 족보의 음성적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조사한 영상을 제작하여 해당 영상을 이 학과장회의에서 송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우리 학교에서 KLMS에 전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 게시판을 신설하기로 하였고 지금 현재 신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KLMS에 들어가 보시면 전체 공지사항에 있는 전체 메뉴 탭에 기출문제 은행이라는 탭이 새로 생겼고 이를 가을학기부터 관리하여 교수님들께서는 이 해당 기출문제 은행 탭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족보들을, 이제 기출문제라고 칭하는 그 족보들을,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기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 총학생회에서 다시한 번 내용을 정리해서 전체 학생분들께 안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진행한 후에는 학생분들이 교수님께 먼저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족보가 공유되고 있는데 우리 과도 그리고 우리 과목들도 교수

님께서 족보를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학생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음성적으로 매매하지 않더라도 모든 분들께 족보가 잘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이어서 학생복지위원회와 행사준비위원회, 학생문화공간위원회는 제가 대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낭독) 이어서 건설및환경공학과부터 보고 부탁드립니다.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안녕하세요.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입니다. (주요내용 낭독) 6월 16일 금요일 21시부터 23시까지 건설및환경공학과 학부생 대상으로 종강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앞선 단위의 보고가 끝나면 이제 별도로 발언권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보고 사항 없음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 네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입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기술경영학부 재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물리학과부터 부탁드립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네. 물리학과 보고사항 없는데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서울대,, KAIST, POSTECH 물리학과끼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한정현: 바이오및뇌공학과 재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산업디자인학과부터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입니다. (주요내용 낭독)

○의장 한정현: 네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재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과부터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 네 생명과학과 학생

회장 안준서입니다. 보고 사항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오늘 결석이 좀 많네요. 생명화학 공학과도 재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과학과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네. (주요내용 낭독) 이상입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학생 회장 이창섭입니다. (주요내용 낭독)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융합인재학과 학생 회장 김시은입니다. (주요내용 낭독) 이상입니다.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입니다. 보고 사항 없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전기및전자 공학과 학생회장 홍의상입니다. (주요내용 낭독) 이상입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주요내용 낭독) 이상입니다.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입니다. (주요내용 낭독) 이상입니다.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입니다. (주요내용 낭독) 이상입니다.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네. 새내기학생회장 송채빈입니다. 현재 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새내기 학생회에서는 여름학기에 있을 후기 새내기 새로배움터 진행을 위한 새내기 새로배움터 외부 기획단 선발을 통해 현재 2023년 후기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단 인원을 모두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6월 26일 11시 30분 곧 있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가 모두 종료된 이후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와 함께 새내기학생회 새내기과정학부 소속 학생 및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소속 학생들 간의 편의를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동아리연합회장 오윤석입니다. (주요내용 낭독)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4개 전문기구는 제가 대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낭독)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안건 제2호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특별한 질문이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면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2호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3.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운영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운영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학생회칙 제62조제3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위원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재석해 계시는데 회칙개정특임위원회 관련해서 제안설명 가능하실까요?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준환: 어떤 제안 설명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의장 한정현: 제2023-2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부터 제4회까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준환: 네 알겠습니다. 제2023-2회 회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는 제2장 학생총회와 의결기구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개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23-3회 회의에서는 제2장 개정에서 일부 보려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였고,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23-

4회 회의에서는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본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회칙안을 작성까지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남은 2개 위원회는 제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뇌인지과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제2023-3회 회의를 통해 한 건의 보고안건과 한 건의 논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제2023-4회 회의를 통해 두 건의 보고안건과 한 건의 심의안건 두 건의 논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뇌인지과학과학생회 설립준비위원회 산하에 운영부와 기획부에 대한 진행 보고 전학대회 학생회 설립 인준안 제출을 위한 하반기 예산 관련 논의, 사업 계획 관련 논의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에 안건명과 회의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 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제2023-1회 회의를 개최하여 한 건의 심의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세 개의 위원회가 여러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회 중앙운영위원회까지 회의 진행한 내용들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회칙개정특임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나머지 2개의 준비위원회는 올해 7월까지 존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안건 제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본 세 개의 위원회들은 구성과 모집하는 과정을 위원 여러분들께 직접 지켜보셨고 참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한정현: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위원회 운영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 3호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 4. 보고안건 제4호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내부 호선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4호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학생회칙 제1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결과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후에는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인준안을 전학대회에 제출하여 전학대회에서 인준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동아리연합회장으로 참석하신 오윤석 전 위원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 오윤석: 네 전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입니다. (주요내용 낭독)

○의장 한정현: 네 붙임 자료를 통해 내부 호선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023-5회 문화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4월 23일에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내부 호선하였습니다. 총 9명 중 5명이 재석하여 찬성 5, 반대 0, 기권 0 으로, 박병찬 학우를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부 호선하였습니다.

관련해서는 인준소위원회에 검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검토의 주요 내용이 위원장직을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질의하였고 이에 관해서는 그 이후 오윤석 위원장이 사퇴하여 질의한 내용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퇴 보고 또한 지난 중앙운영위원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 보고를 받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해당 내용 포함해서 보고안건 제4호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별도의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4호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4호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접수됨에 따라 차회 전학대회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전학대회에서,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인준할 계획입니다.

---

#### 5. 보고안건 제5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5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치기구에서 자치기구회장단 등 선출직의 선출·탄핵·사퇴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거권과 피선거권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네. (주요내용 낭독) 보통 과대표를 같은 학년 학생들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저희 과의 경우에는 인원이 워낙 적어서 8명을 대상으로 3명 중에 선발하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선거권자를 확대 해석하여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주전공 학생 총 32인 내 선거권자 중에 투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낭독)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안건 제5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받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현: 여러분들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쭙보겠습니다. 선거 일정을 보시면 지금 6월달에 보고가 다 끝났는데 보고가 좀 늦었어요. 제가 이것저것 여쭙어보고 메일 주고받느라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쭙어 보았던 것 중에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과총투표로 이제 과대표를 선거를 하셨는데 이게 규정상 가능한 건가요?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규정상 규정을 위배하는 조항은 없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지금 보시면은 기재해 주신 유효투표율의 근거가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자치규칙 제49조고 이것이 학과총투표의 관한 내용인데 학과총투표의 투표 기간이 3일의 범위에서 학과 투표관리위원회

가 정하고 투표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도 50%를 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는 등 해서 유효투표율이 50%이고, 3일의 범위에서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 기간을 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과대표 선거를 총투표로 해도 되는지와 그리고 투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보고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선거 시행 주체로는 운영위원회를 적어주셨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회장께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학과총투표에 나와 있는 투표관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학과총투표로 부의하고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기 내용만으로는 제가 파악하기 어려워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우선 제가 위원회의 위원이자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모든 사항들을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49조에 나 있던 그런 어떤 기한이나 50%는 제가 넘기도록 되어 있다. 조건을 만족을 해서 이제 선거를 완료시켰고요. 그래서 3일 이내 중에서 제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학과총투표로 결정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조항이나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였는데 추가적으로 근거가 더 필요한가요?

○의장 한정현: 네. 설명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혹시 투표관리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투표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는 학년별 과대표와 학생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과대표 분 중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해서 어찌다 보니 이렇게 제가 운영위원회와 위원장 모두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시행 주체가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더해서 투표관리위원회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조항을 확인해 보니까 제48조 투표관리위원회 제1항에 학과

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과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과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학과 투표관리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위원회가 학과 과대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과대표단을 구성해서 그분들과 함께 회의를 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신변상의 이유로 참가하지 못하는 과대표들이 많아서 할 수 없었습니다.

○의장 한정현: 우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여쭙보고자 했던 내용들은 일단은 설명해 주신 것 안에서 공유는 된 것 같고요. 다른 분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의 의견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의견 더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5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채팅이나 발언 등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5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박성빈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께서는 선거 진행하시고 안건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융합인재학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선출국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선출 보고 많이 다루었는데 선출 보고 작성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검토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관련해서 좀 더 선거가 원활히 진행되고 이제 곧 다가올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해서도 좀 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더욱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6호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출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치기구에서 자치기구회장단 등 선출직의 선출·탄핵·사퇴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새내기학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네. 새내기학생회장 송채빈입니다. (주요내용 낭독) 참고로 새내기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해당 20대 새내기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여름 학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 가을학기가 개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출 보고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봐도 괜찮을까요? 회장단이랑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아마도 첫 회장단이 생겼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기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인가요?

○의장 한정현: 네. 현재 제20대 새내기회장단 선출인데 ARA에 공고된 내용에는 제21대 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쭙어보고 싶었습니다.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네. 그게 저도 정확히 어떠한 연유로 과거부터 한 대수가 차이났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중간에 비대위 체제가 한번은 생기면서 다음과 같이 한 대수만큼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새내기학생회장단은 20대가 맞고 이 회장단을 위해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가 맞습니다.

---

## 6. 보고안건 제6호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출 보고

○의장 한정현: 네. 감사합니다. 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제가 해당 선거에서 선관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제가 알기로 20년도 초에 선거가 무산된 이후에 비대위가 열렸고 비대위 이후에 다시 가을에 재선거를 할 때 선관위 대수를 하나 더 늘리고 회장단 대수는 그대로 하면서 거기서 1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다소 급하게 물어봤는데도 두 분 모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쭙보면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는 '선거 관련된 사항들을 투표일 3주 전에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 투표일이 5월 31일이고 공고일이 5월 13일인데 이것이 주차를 따질 때 3주 전이면 마이너스 21일이 아니라 3주 전에만 있으면 되는 걸로 해석이 되어온 것인가요?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반: 아니요. 이거 관련 돼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3주 전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는 것이 먼저나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해당 이 시간 안에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내기학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공고 일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유효 득표율을 넘기기에 참여 인원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선거 시행 공고일을 해당 3주보다 조금 앞당겨서 조금 늦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새내기학생회 운영위원회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저도 단서 규정 봤었는데 이게 애매하게 3주로 걸쳐 있었고, 단서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승인 내용이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출 보고에 없어서 해석의 차이인지 궁금해서 여쭙봤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다른 위원분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 6호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출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시

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6호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출 보고를 원안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선거 시행하고 안건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 7. 보고안건 제7호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7호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80조제5항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저희 재정사무국장께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지난번 논의안건하고 달라진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한 활동인증서 Google Forms가 화면에 송출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 네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 입니다. 우선은 지난번 논의 사항과 크게 달라진 점은 우선 발급 절차 과정에서 저희가 소통 페이지를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그 페이지를 활동 인증서 발급 페이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페이지 접속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밑에 기구별 활동 확인서 신청 링크로 해서 각 기구별 활동 확인서 신청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활동 확인서 제출을 받을 때는 각 기구별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활동 확인서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외에 크게 달라진 점은 저희 제도 개편 타임라인인데요. (주요내용 낭독) 그 외에는 따로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별첨 자료를 잠깐 보시면 제가 활동 확인서에 워터마크가 아니라 본 활동 확인서는 활동인증서 발급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멘트를 달아놨어서 활동 확인서가 활동인증서 발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게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 낭독)  
그 밖의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붙임 자료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안은 없습니다. 보고안건 제7호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현: 여기서 보고안건이 원안대로 접수되면 본 안건에 있는 내용, 즉 저희가 설명 드린 내용대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시점은 7월 7일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구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현재 4시 53분인데 1분 정도만 검토 시간 더 드리고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의장 한정현: 특별히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건 제7호 활동인증서 발급제도 개편 보고를 원한 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의장 한정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7호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에서는 접수된 보고안건의 내용에 따라 추후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심의안건입니다. 심의안건이 5가지가 있는데 제1호와 제2호가 추가경정예산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대략 1시간 가까이 다돼가고 있는데 잠시 휴회를 했다가 진행할까요? 아니면 우선은 심의안건 두 건을 마저 진행을 할까요?

뒤에 심의안건 세 건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을 좀 오래 들여야 돼서 한번 휴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1시간이 거의 조금 안됐기 때문에 심의안건 두 건 정도는 이어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산학부하고 새내기학생회에서 두 건은 마저 진행하는 걸로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의견 주

신대로 심의안건 두 건까지 마저 심의를 하고, 시간을 들여서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휴회를 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8. 심의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의장 한정현: 네. 심의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 심의의결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여 학생회칙 제170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부터는 재정사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 네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입니다. (주요내용 낭독)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관련해서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은 붙임1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은 붙임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대행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총학생회 계좌에서 광고 수익금을 받고 이것을 행사준비위원회, 상설위원회, 행사준비위원회로 송금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 내용이나 구체적인 금액 자체가 광고 계약을 맺을 때에는 저희 재무국에 안내가 안되어서 최종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송금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고수익금 250만 원 상당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그 밖에 봄학기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활동 보고를 작성하면서 변경에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심의안건 제1호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발언권 요청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총학생회장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여기 안내되어 있는 학교 유관부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아 족보 공유, 건강 테마

강연, 연사 초청 콘서트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으로 당해 연도 예산을 감축함이라고 작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기존에는 해당 부분의 예산을 잡아두려고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를 0원으로 하려는 계획인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상반기 일을 꼭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따로 중앙집행위원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유관부서로부터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강 테마 강연, 연사 초청 콘서트 등이 지금 진행할 수 있을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있는데 당장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진행하더라도 중앙집행위원회 내부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내용으로 인해서 학교 유관부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비취질까 봐 오해가 있을까 봐 지금 안내 말씀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추가적인 부연 설명 감사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올해 초에 2월 말에 계획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라고 계획서에 기재해 두었고, 그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해 두었으나 실제로 학내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따라서 상반기 내 여름학기 이내까지 추진여부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해져서 진행을 하더라도 학교 유관부서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0원으로 감축해 둔 상태입니다. 이것이 0원이라고 해서 아예 사업을 폐기한 것도 아니고 또 학교 유관부서 예산으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유관부서와 협의가 다 끝난 상태다 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분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1호에 대한 표결을 게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의장 한정현: 네. 심의안건 제1호 표결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사전에 배부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1호의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재적 21명 재석 16명 중 찬성 1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9. 심의안건 제2호 새내기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2호 새내기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 심의·의결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여 학생회칙 제170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새내기학생회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네. 새내기학생회장 송채빈입니다. 지난번에 서류가 좀 오류가 많은 관계로 지난번 중운위에서 부결된 해당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안에 대해서 다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본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낭독) 지난 회의에서는 새내기학생회장단 선거 관련해서 수입 부분에 본회계의 예산을 받고자 문제가 생겼었으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회계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기로 내부에서 결정을 하기에 해당 부분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받아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면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받고자 했던 예산으로 새내기실 운영을 위한 물품비로 15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10만 원을 추가 경정을 통해 받고자 하였고 추가로 세미 학생회 상당 선거를 위해 상품비를 결제해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으로는 상품비 구매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해당 원래 잡혀 있던 예산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추가한 30만 원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해년도 예산 총 지출의 16.04%인 30만 원에 대한 추가 경정

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내기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과 관련해서 질문과 의견 받겠습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됐기 때문에 본 안건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주시면 됩니다.

○의장 한정현: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운영비 중에 새내기학생회실 운영 물품비에 비품 관리비가 20만 원이고 침구 세탁비가 5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기존에 비품 관리비 10만 원을 추가 경정하는 건가요?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네. 맞습니다.

○의장 한정현: 원래 심의받은 예산은 비품 관리비 10만 원하고 침구 세탁비 5만 원 이렇게 해서 15만 원이었던 건가요?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네. 맞습니다.

○의장 한정현: 알겠습니다. 예산 규모도 이월금 내에서 처리 가능한 규모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2호의 표결을 게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의장 한정현: 네. 그러면 심의안건 제2호 새내기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표결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배부드린 전자 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2호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2호 재석 16명 중 찬성 1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심의안건 제2호 새내기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되

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심의안건 제3호부터는 10분 정도 정회한 이후에 안건 심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10분 후에 체크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2시 12분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22시 22분까지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 점검하겠습니다. 재석하신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Zoom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시 22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2:12 정회)

(22:25 속회)

○의장 한정현: 네.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성원 점검을 하겠습니다. 재석한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Zoom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시각 22시 23분인데 24분까지 속회 재석 인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무국장께서는 속회 인원 파악이 완료되면 간사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지났음으로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께서는 성원 파악하셔서 간사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전달받는 대로 성원을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창섭: 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 중앙운영위원 21인 중 15인 재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3-14회 중앙운영위원회를 속회하겠습니다. 현재까지 7건의 보고안건과 5건의 심의안건 중 보고안건은 모두 심의를 마쳤고 두 건의 심의안건을 심의의결하여서 현재 3건의 심의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0. 심의안건 제3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3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별첨 자료 3개는 카이위키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파일 경

로나 디렉토리를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재무국장님께서 저희 Zoom 채팅에 올려주시면 해당 내용으로 같이 보면서 안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올려주시는 동안 제가 안건의 제안설명 중 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1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일부개정회칙안을 발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하게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낭독) 해당 내용은 저희 중앙운영위원분들 중에도 저를 포함해서 여섯 분이나 속해 있는 회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 지난 두 달 동안 만든 발의안으로 금일 회의에는 특별히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재석하셔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파일을 올려주시면 위원분들 다 같이 보면서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로 업로드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셔서 제 화면으로 직접 다운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의 목적 및 경위에 대해서 함께 파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준환: 네. 안녕하세요.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준환입니다. 학생회칙 일부 결정 회칙 안에 대하여 목적 및 경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행 학생회칙의 자구 및 체계를 대한민국 법령 수준으로 정비하여 학생회칙의 가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장과 절별로 설명을 먼저 드린 이후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에서는 어법과 표현의 체계 자고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행 학생회칙 체계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제3절과 관련해서는 학생 총투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또한 학생 총투표 효력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제2장 제3절에서 규정되어 있는 학생총회의 권한 및 시행에

대해서도 정비하였습니다. 제2장 제4절에서는 핵심 내용으로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서 현행 조문으로는 위원장 단으로 묶여 있어 이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모순되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결기구 중 하나인 전학대회의 안건의 상정 시기 등을 명시하고 기타 자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제5절에서는 중앙운영위원회에 관해서 권한의 책임,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정비하고 또한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의 상정 및 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의장님.

○의장 한정현: 저희가 전학대회에서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을 심의·의결 할 때 축조심의를 하기 때문에 조문별로 보는 거는 전학대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중앙운영위원분들께 접촉이 되어서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화 할 때는 절별로 묶어서 한 번에 이 절에서는 이런 부분이 주로 영향이 있고 의결에서는 이런 부분이 주로 영향이 있고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준환: 그러면은 먼저 제1장 관해서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앙운영위원회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10조에 이제 사무처리 세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칙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학생 세칙에서 특정 명칭 예를 들면 사무처리 세칙, 선거 시행 세칙과 같이 세칙명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모두 세칙으로 일반화하였습니다. 이는 회칙에서 세칙으로 조항을 위임을 할 때 보다 유동적으로 회칙으로 정함으로써 학생회칙을 각 개별 처리 사무별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칙으로 일반화하여서 위임규정을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1조 관련해서는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 학생회칙은 정보에 대해서 일부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일부를 공개하거나 내지는 정보의 특성상 특정 일부분만으로도 대부분을 추정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정보 비공개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고, 또한 이렇게 비공개 내지는 일

부 공개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제4항 제4호로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검토 과정이 모두 종료되면 공개를 하여야 하도록 그리고 제2절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장과 관련해서 학생총회가 과거 회칙상으로는 학생총회에서 안건이 무산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으나 현행 학생회칙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학생총회에서도 총학생회장단(불명)을 의결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7조와 관련해서는 목적 및 경위에서 추가적으로 보충되어야 설명되어야 할 것이 학생 총투표는 사실 학생 총회와 총회와 대등한 그러한 권한과 효력을 가지는 투표인데 학생총회의 경우에는 구성원을 본회의 회원이라고 하고 있기에 총투표 역시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에 선거권을 가진이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본회 회원으로 통일성을 가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사항으로는 자구로 정비하였고요. 35조도 자구 정비를 하였으나 다만 전기 전학대회를 1분기 초 그리고 모두 용어를 분기 초로 하기 때문에 이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였고, 또한 35조 관련해서는 대의원을 회장단 중 1인으로 하는 경우 불명확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회장이 모두 당연직 대의원으로 활동을 하기에 이러한 현실에 맞게 제1항제3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해서는 자구 정비를 37조와 38조는 자구를 정비하였고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안건을 상정하는 요건으로 사실 하는 것이 맞기에 업무를 안건의 상정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9조의2에서는 현행 학생회칙은 안건의 상정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건의 상정 시기를 각각 39조에서 38조에 의해서 발의된 경우에 따라 각각 어떻게 처리할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9조의2에서 제38조의2가 아니라 약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제39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38조의2가 아니라 제39조에 따라서 안건이 발의되고 이에 따라 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9조로 되어야 하는데 개정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여서 발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우선은 관련 내용은 검토를 마친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어서 마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준환: 그리고 41조의 경우에는 탄핵안이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된다는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47조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분리해서 인준회의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43조에서는 그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한 44조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전학대회 대의원을 대의원으로 그리고 단서 조항을 정비하였고요. 그리고 45조에서는 용어를 중앙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의결을 하였음을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또한 47조에서는 보고를 하는 회의를 전학대회 정기 회의라고 할 경우 분기의 1회만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 단체 활동을 중앙운영위원회 전기 회의에도 보고하도록 총학생회장단에게 의무를 지우는 그러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47조 제3항은 현행 대한민국의 소송법 등과 관련해서 소송법의 요건에 맞도록 회칙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8조에서는 전체 학생총회 소집의 학생 총 투표의 시행이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내지는 3분의 2 이상의 전학대회의 찬성이 필요하였는데 이를 다른 3분의 2 요건을 요하는 안건들과 동일하게 맞추고자 재적대의원 과반수 재석, 그리고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또한 중요안건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그리고 기금의 타 회계 전용과 같은 중요 안건의 경우에는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 제시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재석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경우에는 서면 의견을 전학대회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서면 의결 관련해서는 조항을 정족수로 정비를 함으로써 정족수 부분을 서면 의결을 규정하지는 않았고요. 결과 공고는 본회 회원에게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중앙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개정되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조의 경우에는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학생회장을 당연직 중앙운영위원회로 하도록 자구를 정비하였고요. 그후에 52조에서는 명확하게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인

54조에서는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인준된 1인으로 하도록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직무대리에 대해서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5조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제1항에서 정기회의를 현행 매달 1회 개최하도록 하는 것을 2주에 1회 개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들의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학생 사회에 중앙운영위원회의 활동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의 경우 임시회의에 대해서도 소집 기한을 5일 이내로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의 경우 회의 소집 공고에 대해서도 현행 규칙은 3일 이전에 보내 회원에게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안전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되고 제출되는 시한 등을 감안하여 회의 24시간 전에 소집을 공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6조는 조문을 안전의 상정으로 정비하였고요. 56조의2에서는 안전의 상정 시기를 정하도록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57조는 자구를 정비하였고, 58조도 자구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59조에서도 자구를 명확하게 정비하되, 다만 전학대회가 중앙운영위원회보다 상위 기구인 만큼 취소하는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취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정당성을 보다 찾기 힘들기 때문에 전학대회도 할 수 있도록 현행 금지되는 사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9조의 2에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본회 또는 산하기구의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가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0조에서는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62조에서도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명칭을 정비하고, 또한 이러한 위원회에 대해서도 중앙운영위원회에게 명확하게 운영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또한 관련해서 산학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조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를 현행 회칙을 보다 명확하도록 하고, 또한 재적, 중앙운영위원회와 과반수 재적, 그리고 재적의 과반수 찬성에 대해서도 특별히 세칙 및 규정의 재개 폐지 내지는 예산안 재심의, 추가 경정 중 예산안 편성과 등의 경우에는 찬성 요건을 3분의 2로 강화하도록 하고, 또한 현행 회칙과 같이

제3항에서는 현행 회칙과 같이 전학 대회 서면의결 실시안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3분의 2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요건을 명확하도록 하였습니다. 65조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중을 회원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54조, 156조, 159조, 164조에 대해서는 특정 명칭의 세칙으로 규정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세칙으로 규정하도록 회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의 목적 및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에 목적 및 경위 이외에도 친구조문대비표와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을 카이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주시면서 질문이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접촉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서 현재시각 22시 46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우선 50분까지 검토 및 질의 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학부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 제55조 소집에 관한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 55조 제1항의 경우에는 매달 제1회 개최했던 중운위 정기회의를 2주에 1회 개최한다고 변경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앙운영위원회 내부적으로 투표 그리고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결론적으로 제일 다수가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도 상세히 다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이것을 고려하고 회칙 개정을 진행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인지 여쭙습니다.

○의장 한정현: 우선 한 가지 명확히 말씀드리는 점은 지난번에 투표를 받은 것은 임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일정을 픽스하는 건이었고요. 이거는 그와는 별개로 정기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한 달에 두 번 2주에 한 번씩 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엄밀히 다르고 그때 나왔던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저희 특임위원회에도 계시는데 그때 나왔던 반대 의견은 임시회의를 마치 정기 회의인 것처럼 전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회칙상에도 적절치 못하고 또 실제 운영상에도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해당 내용과 투표 결과 충분히 고려도 되었고 이 개정안의 내용과도 일정 부분 거리가 있음을 답변으로 알려드립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러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그때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께 여쭙보고 싶은데 지금 그게 임시회의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고 정기 회의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중운위를 보았을 때 저희가 5월 29일에 개회를 했고 지금은 6월 26일에 다시 제14회 정기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럴 경우에는 한 달간 기말고사 기간을 고려해서 한 달 정도 텀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것인데 지금처럼 회칙이 개정될 경우에는 중간에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이 다 고려된 것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의장 한정현: 중간에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시험 기간의 경우에는 휴회를 의결하는 등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수리과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네. 그때 반대 의견을 줬었던 사람이고요.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질문에 답변드리기도 할 겸 여기서 제 의견도 함께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그러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임시회의 일정을 픽스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회칙을 이런 식으로 개정한다든지 어쨌든 거기에서 언더라인하고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은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전에는 여지였고 이제 지금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만 어

쨌든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그때 반대했었던 내용들이 준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학생회칙 일부 개정안 중에서 특히나 회의 주기에 관하여서는 개정을 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지난 5년간의 중앙운영위원회의 개회 횟수를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18번 정도 실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20번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서면 의결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서면 의결이 이제 각 위원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나 시간을 할애해서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실제적으로 지난 5년간 평균 한 16에서 17회 정도의 정기회의 그러니까 대면 회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사실 이제 지난 5년간 이렇게 잘해 왔었던 거를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회의의 횟수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회의의 횟수가 많아지는 거가 왜 효율적인 것과 이어지는 건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회의를 두 번 한다는 건 어쨌든 개회랑 폐회를 두 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개회랑 폐회를 하려면 우리가 그 자리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위원들이 감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회의를 한 번만 하게 되면은 똑같은 내용을 2시간짜리를 이제 1시간, 1시간 쪼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1시간과 1시간 사이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개회 성원점검, 폐회 성원정검 하는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저는 그래서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 때도 계속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주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최근 5년간 18회 정도 개회를 했었으나 한 번 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의 양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던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이것을 정기적으로 약 20회 정도가 되겠네요. 20회에서 22

회 정도 쪼갠 때 좀 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고 또 한 번 회의에서 다룬 안건의 개수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언제 개최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정기회의에서 부의가 안 되면은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의사일정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또 안건을 언제 부의해야 될지 일정 등을 위원들로서도 어레인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더 받고 관련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네. 계속 임시회의의 일정을 고정할 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기회의를 두 번 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의사 일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것은 이제 위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됐었던 이유는 사실 어찌 보면은 물론 의사 처리가 필요한 위원들도 있겠지만 나머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거 회의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중앙운영위원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 같아요.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할 마음대로 언제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일부가 제한되는 거면 사실 입법의 원칙에 따라서도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그만큼의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중운위가 몇 명이죠? 20명인가. 어쨌든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 번 회의를 하고 한 번 폐회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더 지우는 것이 그 과정에서 있는 그 의사 일정의 효율성 어찌고 보다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사실 이거 회칙개정특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냥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 정도로만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나왔었던 바가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효력하고 있다고 중운위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회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는 이제 특임위원회 위원 9명 중 과반 이상이 이제 2주에 한 번 개최하는 것에 찬성을 해서 이렇게 중앙운영위원회에 안을 올리기로 의결을 했었고요. 덧붙이자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2주에 한 번 한다고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거는 조금 과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장께 일단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제가 지금이나 아니면 방금 이 논의를 시작했을 때나 발언을 요청드렸던 이유는 저는 수리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했던 투표가 임시회의고 지금 일부 회칙 개정안에서 다루는 것은 정기회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내부에서도 그러한 이유로 지난번에 설문 결과 그리고 반대 의견으로 나왔던 것들이 다 무시됐는지 그런 것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불명)학생회장님과 그리고 수리학과 학생회장님이 다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 드리자면 저는 지금의 구조로도 분명히 중앙운영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빠르게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저희가 임시회의를 충분히 소집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많은 중앙운영위원 분들이 무관심하다거나 아니면 참여 연서 같은데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또 2주에 1회 개최한다고 해두고 시험 기간 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럴 거면 지금처럼 매달 1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자면 저는 이 중앙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앙운영위원회 운영 그리고 이 회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또 그것만큼 각 과 학생회장분 들 그리고 동아리연합회 회장님, 새내기학생회장분 들 이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열심히 운영하는 것도 중요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권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곳에 조금 더 시간을 썼고 본인의 활동들에 책임을 지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아서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임시회의로 운영되는 것을 2주에 1회 로 의무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 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 게 답변을 드리면 2주에 한 번 회의를 개최 하기 위해 서 임시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소집하는 것보다 시험 기간에 한해서만 정기회의를 휴회하도록 의결하는 것 이 회의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방향이고요. 실제 로 로드나 어려움이 덜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 처럼 각 학과에서 단위에서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 서는 지난번에 시험기간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추가경 정예산 심의안이 6개씩 올라왔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 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잘 해야 각 학과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또 서포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 건 회의를 적게 한다거나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이 각 학과에 신경을 더 쏟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라는 것과는 linear하게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회의 를 매주 하고 이틀에 한 번씩 하고 하면 당연히 학생 회장으로서는 학과에 신경 쓸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각 학과에서 예산 심의라든가 아니면 추 가적인 예산 지원 등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지, 학과 행사나 사업에 신경 쓸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다는 것과는 실저히 다 를 수 있겠습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발언 한번 해도 될 까요?

○의장 한정현: 네. 물리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네. 물리학과 학생 회장 박세현입니다. 매달 1회 개최하는 거에서 2주 1 회로 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고려했던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기존에는 시험기간을 제외하고서는 항상 2주에 한 번씩을 열었던 건가요?

○의장 한정현: 네. 그렇습니다. 올해 수리과학과에서 올려주신 채팅을 봐도 연평균 18회 정도 개회를 했었 고 1년에 12개월이니까 시험 기간 4번 제외하면 20회 정도가 될 텐데 평균 18이라서 일주 한 달에 두 번씩 한 것이고 올해만 보아도 이미 한 달에 두 번 이상 평 균을 내면 두 번 이상 개회를 했습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네. 알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건들의 개수나 주기가 한 달에 한 번은 적고 2주에 한 번이 적절하다고 고려가 되어서 2주 한 번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레퍼런스로 타 대 학의 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의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나 UNIST 등에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중앙운영위 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 점에 비해서 KAIST 의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주기는 한 달에 한 번으 로 텀이 긴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처리된 안건의 개수 나 연간 개최되는 대의 실적을 봤을 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꼴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회의 규 정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까지 하기보다는 정기회의 로 변경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자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 다. 손 드신 순서대로 수리과학과 먼저 발언권 드리겠 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수리과학과 학생회 장 박재익 입니다. 일단은 의장님의 데이터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연평균 18회를 개최했으면 이제 1.5회를 계획한거면 개회를 두 번 한 달만큼 한 번 밖 에 하지 않는 달이 있다는 사실이 빠진 거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에는 이제 마치 개회를 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이거 회의 세보면서 그거 그러니까 이거 5년치 회의를 다시 세보 면서 매달 정기회의는 다 개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요.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열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멀쩡하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 17, 18회 이런 걸 보고서 이제 한 달에 두 번 계획 한 해를 볼 게 아니라 절반 정도는 정기 회의만 계획도 충분했었네라는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됐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의결로 운영하던 위원들 혹은 의장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했어도 충분히 효율적이고 이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석 운영이 되었다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실제로 과거 의장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만약에 의장님의 판단이 맞다고 쳐도 그거는 절대적인게 아니고 이게 회칙 개정까지 이어져야 할 이유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멀쩡하게 운영이 되었었던 해가 있다는 거 자체가 이제 이거회칙 개정까지 이어져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 대학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타 대학에서는 이제 저희 학교보다 기조도 다르고 그다음에 학과도 많다는 사실을 이제 빼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8월에 한 달에 28시간을 회의를 했습니다. 한 달에 28시간을 회의를 했으면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연세대 학교의 경우에는 이거 지금 사실 지금 송출이 되고 있어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밤 9시에 개회된 게 이른 날 새벽 5시에 폐회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만큼 연세대학교에서는 다룰 게 실제로 많기 때문에 많다는 게 그냥 단순히 안건 우리가 하는 것처럼 4시간 5시간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나절을 넘어가서 새벽까지 하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재회를 하는 것이지 그런 상황을 이제 카이스트에 정확히 개입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긴 하나 우선은 발언권 시청해주신 분들이 많으셔서가지고 의

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제가 아까 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신속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다가 일단 논의가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 의견을 피력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주에 한 번씩 진행하고 또 우리가 자주 모이는 것이 의장님께서서는 우리가 더 앞으로 진행을 잘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추가경정이 한 번에 몰리거나 그런 것들을 중앙운영위원회가 자주 열리고 우리가 자주 만나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5월 3일에 의장님께서 의견 수렴 임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에서 의견 수렴을 주셨고 그리고 이때 말씀해 주셨던 게 이미 4개월 동안 매달 2.5회씩 개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월은 심지어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방금 말씀해주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우리가 자주 모이고 더 함께 논의하고 더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서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더 나은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나 그 방법이 그걸 해결하는 수단이 2주에 한 번씩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나 아니면 제가 총학생회장으로서 그리고 많은 각 과 학생회장 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나 혹은 감액 혹은 변경 사항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조치하는 게 있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안내를 해주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면 물어보고 알려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역할을 그리고 이것이 책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이거 회의를 많이 늘리는 것으로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학교와의 비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리학과 학생회장님과 다른 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카이스트만이 가진 장점으로 이걸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21명이 중앙운영위원 이고 그리고 카이스트라는 학교 자체도 다른 종합 대학에 비해 인원이 크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학교들 만의 사례를 전적으로 쫓아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전반적인 요지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좀 제가 발언했던 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만 해명을 해드리면, 2주에 한 번 개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에 개최한 제2023-13회 중앙운영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이 6개가 올랐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때 그 회의에 그 안건들을 처리를 못했으면은 그 6개 기구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 주기를 가지고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였습니다. 6개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다가 아니라 그 정도 주기를 가지고 개최해야 관련 안건들을 처리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앞서서 다른 중운위원분들께서 한 달에 한 번 정기회의를 하고 추가적인 회의는 임시회의로 하는 현 제도가 이미 충분히 효율적이고 이것이 KAIST만의 장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저 통계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올해 중운위를 참여했던 것을 보면 시험 기간과 방학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보통 한 달에 두 번 꼴로 모였던 것은 대체로 맞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정기회의 별개로 임시회의를 계속 여는 바람에 그렇게 비슷하게 모였고 근데 저는 임시회의가 이렇게 많이 열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정기회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규정을 회칙상에 해놨지만 사실상 어차피 회의는 무조건 필요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으로 항상 열리게 되고 임시회의 날짜를 새로 잡아서 이걸 열어야 하게 됩니다. 근데 임시회의를 보통 일주일 전 정도쯤에 잡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임시회의가 정해지면

그때 원래 수행하고자 했던 각자의 일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저는 임시회의 때문에 학생회 내에서 미리 진행해야 할 회의에 참석을 못한 적이 상당히 많아요. 주로 임시회의 날짜가 학생의 회의들과 겹치는 시간대가 많았어서 근데 그런 사례가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임시회의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향이 모두가 각자 자치기구 일도 잘하면서 이런 학생회 간에 어떤 교류나 이런 중요한 회의들을 잘 진행하는 거 두 개를 모두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학교의 사례는 타 학교고 우리는 또 우리 학교만의 장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임시회의가 규정된 정기회의 이외에 이렇게 많이 열리는 학교가 또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회의가 그렇게 열려야 한다면 딱 정기적으로 미리 정해진 일정에 사전에 모두가 정말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나마 미리 조율된 일정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관련해서도 위원들께서 충분히 어떤 요지로 말씀하셨는지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안건 자체가 이제 2주에 한 번 개최하는 안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 이걸 좀 찬성하는 쪽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배경이나 히스토리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한 번씩 다 발언을 들은 이후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수리과학과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과학과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21년, 20년 이렇게 개회를 했었고 하면 당시에 의장이나 위원들이 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괜찮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수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것이다,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의장들이 여럿 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21년하고 22년에 제가 했었죠. 제가 21년 4월부터 8월까지 부위원장을 했었고 21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위원장을 해서 사실 저기 있는 5년 중에 절반은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

게 진행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의를 어떻게든 개최해서라도 필요한 안건들을 처리했던 것인데 여기서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절대 그렇게 개최한 것이 그렇게 개최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연간 20회에, 서면의결 제외하면은 연간 평균 한 15회에서 18회 정도 개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개최했음에도 안건을 처리하는 데 불편함과 문제 상황, 어려움 등이 많았어서 이를 고려해서 반영하고자 안건을 다음과 같이 정기회의를 2주에 개최하는 안으로 올렸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대학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학교의 기초나 인원수나 학과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회의 시간도 길기 때문에 매주 하지 않고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회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매주 한 번 하지 않으면 감당 불가능해서 한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맞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분석이 됐었고요. 근데 다만 학교의 인원수나 학과의 개수나 이런 걸로 따져보기에는 좀 반례로 작용할 수 있는 게 UNIST의 경우에도 오히려 KAIST보다 학과 개수가 더 적으나 회의는 매주 개최하고 있고 안건의 개수가 적고 회의 운영 시간이 짧고 하더라도 실제 대회 개최를 하면서 그 내에서 꾸준한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꾸준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등에 있어서 이거를 다른 사례들을 보고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은 개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의 경우에도 전산학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어도 올해 한 해서는 한 달에 두 번씩 했었습니다. 서면의결을 제외하더라도 두 번씩 했었고 그렇게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회의 참여하시는 게 조금 힘드셨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당장 우리 학과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당장 예산을 써야 되는데 회의가 안 열려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한다 예산을 못 쓴다 이런 일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험에 근거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개최를 해야 정상적으로 본회 산하 기구가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 제가 한 달에 두

번 가까이 개최를 했던 것이지 올해 유독 특별히 많았다거나 아니면 올해 특정한 기조에 의해서 회칙 개정을 하려고 회의를 많이 열었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은 이 정도로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수리과학과 이어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일반론 그니까 이게 어쨌든 회칙 개정으로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다 실제로 이제 나의 생각이 맞았어라는 것을 꾸준히 보여주는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전산학부 학생회장께서는 그 부분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지 않아서 손을 들었던 건데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의장이었을 때 느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서 물론 이제 올해 있었던 일들보다 좀 더 많은 부분을 커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의장을 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느꼈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회칙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의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운영을 했었던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런 횡수로서도 되게 많이 횡수로서도 이게 보여지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회칙 개정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의장일 때만 회의 횡수가 21회에서 19회 정도여서 운영이 어려웠다가기보다는 이전에도 고질적인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장이 아니었던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개최 횡수에 관해서 의견을 인계해 주신 바가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그 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KAIST 총학생회가 겪어왔던 문제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해서 안건을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근거들이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이견 더 받고 추가적인 설명 없으면 의사를 마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준환: 다른 조항 관련해서 수정 의견을 하나 요청드리는 것이 방금 제안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9조에 의해서 제1항과 제2항에서 38조 2가 아니라 각각 39조로 의결할 때 수정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한정현: 해당 내용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서는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시 16분 경인데 17분까지 받고 없으면 마저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시간 지났음으로 끝으로 더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의견 계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없시면 저희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심의안건 제3호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논의가 되었던 것 중에 제55조에 관해서 원안대로 발의안을 의결할지 아니면 변경을 해서 의결할지이고, 두 번째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본 안건에 이제 제39조의2에 오기입이 되어 있어서 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님 혹시 발의안이나 심의안이 의결된 이후에 이 정도의 오기입에 대해서는 오타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아니면 합의 위원회에 위임을 해가지고 자구나 좀 체계를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준환: 188조에서 188조 제2항에서 조항되는 조항 문자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전까지 정의할 수 있다. 단, 내용이나 목적이 변경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분 정도는 정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 한정현: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은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는 후여서 발의안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발의안의 내용을 발의 후에 오타를 좀 수정한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은 현행 회칙에는 없어서 이것이 그냥 법리적으로 가능할지 여쭙보고자 했습니다.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준환: 의견 드리자면 전학대회로 결국 안건이 발의가 될 텐데 발의된 이후에 필요하다면 수정안도 같이 첨부해서 연서를 얻어서 첨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운위에서 수정 동의안을 의결해서 수정안을 수정한 상태로 발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 39조에 의해서 제1호에 제38조의 제1항 제1호인데요. 부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별첨 3에서만 오타가 나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첨 1하고 2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계속 확인을 체크를 했었는데, 네 부위원장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준환: (불명)은 별첨 1에서도 역시 같게 오타 있는 것 같습니다. 39조에 2에서 38조에 2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잠시 숫자를 헛갈렸는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38조의 2를 38조로 각각 수정하는 것입니다.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준환: 39조로 하면 됩니다.

○의장 한정현: 확인 감사합니다.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제39조의 2, 제1호 및 제2호에 제38조의 2를 각각 제39조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께서서는 채팅이나 발언 등으로 찬성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의 제출자 외에 1인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은 학생회칙 일부 개정 회칙안 중 제39조의 2, 제1호 및 제2호에 각각 오타가 나 있는 부분을 제 38조에 2에서 제39조로 수정안이고 이 안이 의결되면

해당 오타에 대해서만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어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반대 의견이나 의견이 없다면은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별도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이 의결되어서 제39조에 의해서 각 호의 내용은 제39조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55조의 소집에 관한 내용 중 정규의 주기에 관해서 안건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기존 제안안인 2주의 1회를 원래대로 복구시킬지 아니면 기존 제안안대로 전학대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을지에 대해서 가투표를 받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가투표 방법에 대해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가투표를 설문조사 기능으로 가능한가 확인해 봤더니 현재는 제공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그러면 채팅으로 1안 2안 이렇게 해서 숫자 세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그러면 제1안을 개정안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2안을 현행대로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가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학부 혹시 어떤 내용이실까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중운위 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것 같은데 혹시 바로 전학대회에 가서 전반적인 학우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 사항을 정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그게 혹시 가능한가요?

○의장 한정현: 말씀 주신 내용은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학대회에 올리고 전학대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하는 말씀이신 건가요? 필요에 따라서 거기서 전학대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중운위 2주에 한 번 개최하는 것에 대한 개정안이 개정을 해도 된다고 하면 원안대로 의결하고 중운위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2주에 한 번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수정해서 의결하자 말씀해 주신 건가요?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네 맞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학부에서 제안 주신 의견은 수정해서 발의하는 게 아니라, 발의를 하고 심의를 할 때 발의 후에 심의를 해야 하니까 심의를 해야 할 때 이제 필요 시 수정을 가하자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으로 보고 해당 발언에 대한 수용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정하고 이 부분이 정해지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투표를 받으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방금 전산학부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일부회칙개정안을 원안대로

○의장 한정현: 일부개정회칙안입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럼 여기 첨부 파일에 잘못 작성되어 있네요. 일부회칙개정안을 원안대로 올리고 전학대회에서 다뤄보자는 건데 이게 원래 저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내일 각각 현행안과 개정안을 상세히 다뤄보기로 했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운영위원분들이 지금 해당 안건 제55조 소집에 관한 안건은 직접적인 당사자 분들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더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 태도라든지 그런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으면 또 우리가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첨부 파일에 어디에 일부개정회칙안 말고 다르게 써있는지 모르겠으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일부개정회칙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학생회칙에 일부개정회칙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래서 제가 일부 개정회칙 안이라고 했는데 일부회칙개정안이라고 말씀해주셔서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의장 한정현: 일부개정회칙안이라고 정정 드렸습니다. 저희가 법률을 할 때 무슨 무슨 법 일부 개정 법률을 하는 것처럼 회칙 개정할 때도 학생회 측 일부 개정회칙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래서 중운위 위원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전학대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정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학대회로 올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보다 더 크게는 오늘 논의한 내용이 결론적으로 똑같이 내일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운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장 우리에게 접촉되는 아니고 또 중운위에 편향된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학우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전학대회에 가서 논의를 하는 것도 충분히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전학대회에는 이듬해 학생회장직을 수행해서 중운위원직을 수행할 걸로 예상되는 스스로 본인이 생각하게 예상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장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총 학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뒤에 심의안건 두 개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컨트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심의안건 두 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빠르게 정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안 39조 보면 수정된 안으로 발의를 해서 소집에 관한 내용 중운위 정기회의 주기에 관한 내용을 전학대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을 하자라는 게 전산학부 제안 안이고요. 이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가투표를 받고 이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찬성할 경우에는 원안대로 발의가 되는거고 부결될 경우에는 개정안에 원안대로 갈지 아니면 원상복구해서 그냥 매달 1회로 다시 돌릴지에 대해서 각각 1안 2안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학생회장님 채팅으로 방금 말한 안이 기존 전학대회에서 다루는 내용과 다른 바가 있냐요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원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안을 발의하는 내용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 그러니까 전산학부 학생회장에서 제의해주신 안이 가결이 되면 그냥 원안을 발의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가투표를 통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원안을 발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입니다. 그냥 한 가지 말씀 생략하신 걸 수도 있었는데 그냥 확실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예 이런 회칙개정안 자체를 발의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의결로서 가능한건지 질문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이러한 회칙개정안이라는게 혹시 오늘 안건이 상정된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발의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발의안 자체가 부결돼가지고 전학대회에 이 수정안이든 원본이든 뭐든 간에 그냥 애초에 개정회칙안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 선택지도 있는 건지 여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계정을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발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순서대로 전산학과 학생 회장께서 제안해주신 의사 진행에 관해서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중앙운영위원께서는 채팅창에 입력해 주면 되고 회의, 의결기구, 운영회칙에 따라서 가투표를 이제 재석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 순서로 체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재석 인원부터 파악하겠습니다. 재석하고 계신 대의원, 중앙운영위원께서는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서도 다소 헛갈리시겠지만 재석 인원 체크 부탁드립니다. 출결 기록지에다가 계속 인원 ox로 표시해 주시면 체크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까지 해서 재석 인원 마감하겠습니다. 14인 재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가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채팅창에 찬성이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찬성할 경우에 전학대회에 안을 발의해서 전학대회서 논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순서대로 받겠습니다. 찬성 먼저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럼 찬성 마감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리학과 학생회장까지 해서 반대 마감하겠습니다. 기권하시는 위원께서는 기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가투표 마감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도 각각 인원 체크하셔서 가투표 결과를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석 14명 중 찬성 3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해당 가투표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투표 결과에 따라서 제55조 제1항에 대한 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가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안은 현행 개정안대로 가는 거고요. 2안은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표현을 좀 서로 파악하기 쉽게 그냥 원상복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니 현행 유지로 표현하겠습니다. 1안이 개정안 원안 발의 2안이 현행 유지 3안이 기권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재석 인원을 세고 1안 2안 기권이기에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1안이 2주에 한 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가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재석인원 세겠습니다. 재석하고 계신 위원께서는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 학생회장까지 해서 재석인원 총 14인으로 집계하겠습니다. 1안 개정안 원안 발의 2안 현행 유지 3안 기권에 대해서 각각 1안 2안 기권 정도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의 의사를 채팅창에 입력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집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분 투표 안 하셔서 마저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14인 인원 맞아서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투표 결과를 마찬가지로 채팅창을 통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 8명 2안 3명 기권 3명으로 1안 개정안 원안 발의로 가투표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의안건 제1호는 원안의 내용을 유지하되 제55조에 대해서도 원안의 내용을 유지하되 제39조의 2에 대해서만 조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네 제38조의 1을 39조로 수정함으로써 심의안건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결을 게시해도 괜찮을까요? 네 심의안건 제1호 표결 게시하겠습니다. 수리학과 학생회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심의안건이 부결되면 발의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회칙개정 특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다른 내용들도 다 같이 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부결될 경우에는 발의가 안 된다는 점도 물어보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심의안건 제3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3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입니다. 중앙운영위원께서는 배부 드린 전자 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3호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위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투표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제3호 재석 15명 중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안건 제3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은 수정하여 심의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반대 사유 받고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및양자공학과에서 반대하셨는데 혹시 간략하게 사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따로 밝히지 않아도 괜찮나요?

○의장 한정현: 특별히 사유가 있으시다면 반대 사유 미기재 정도로 제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미기재 부

탁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총학생회장님께 이어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저는 찬성 사유 남기려고 하는데 찬성 사유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의장 한정현: 네 가능합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우선 제가 찬성한 이유는 저는 방금 제55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중앙운영위원분들과 긴 논의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바가 그러하니까 저는 이에 따르겠다는 의견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칙 개정을 할 때는 아까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5조에 반대했던 이유는 반대하고 그리고 이번 회의 경우 2023년도 의 경우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해보신 경험 그리고 우리가 봄학기 때 한 것을 미루어보아 임시 회의를 2주에 한 번씩 운영을 해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럼 내년도 의장님께 위임을 할 때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것이 정말 효과적이라서 이렇게 앞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이지 지금까지의 논의는 그렇게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아까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뀌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55조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지금 바꾸자고 논의가 된 만큼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중앙운영위원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회의를 개최하고 또 폐회하고 또 소집 공고 결과 공고를 해야 하는 의장과 또 관련된 많은 인원들이 고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논의를 한 만큼 책임감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찬성 사유보다는 그냥 보충 의견에 가까운 것 같은데 찬성 사유로 남겨드릴까요 아니면 보충 의견으로 남길까요?

○총학생회장 강동재: 찬성 사유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럼 회의록에 찬성 사유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올해 이렇게 운영해 보고 내년 의장님께 위임해서 아이디어를 주는 것도 좋겠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학대회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때도 오늘 중운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심의안건 제1호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의안건 제3호 마치겠습니다.

#### 11. 심의안건 제4호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발의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 제4호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발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학생회칙 제185조제1항제1호 및 제191조제3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일부개정세칙안을 발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구 및 체계를 정비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법을 차용하여 의결기구운영세칙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였고,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부개정세칙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이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무국장님께서도 파일 채팅으로 공유해주셔서 좀 더 용이하게 관련 내용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공유해 주시는 동안 우선은 제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검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세칙안이고요, 큰 틀에서 모든 내용을 바꿨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다소 알아보기 불편하게, 혹은 회의 진행의 체계나 경우를 파악하기 어렵게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제법에 나와있는 구조와 스트럭처를 차용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

해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잘 행하고 있었으나 규정상의 근거가 부족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근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뭔가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burden을 지우는 거는 당연히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잘 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관행에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그 근거에 따라 그동안에 좋은 관행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중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대리인 규정 같이 관행적으로 잘 잘 되어 있었고, 카이스트 총학생회 내에서 인정되어 온 관행에 대해서는 이를 명문화하는 작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원격 영상 회의처럼 온라인 회의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하였고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나 중앙운영위원의 임기, 그리고 등록에 관한 규정들도 좀 더 세분화해서, 한 두 줄 적혀 있는 문장만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위안을 방지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들이 의결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인을 회의에 보내는 것이 그동안 근거 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근거로서 만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심의안건 제5호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심의안건 제5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7조 위원회의 경우에도 학생회 측에 있는 중앙운영위원 산하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주는 조항으로서 신설하였고, 제28조 의사조정위원회는 원래 의결기구 수칙에 있던 내용인데, 이를 순서만 알아보기 쉽게 바꿨습니다. 서면 의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장 회의부터는 기존의 의결기구 운영 세칙과 회의 진행 규칙에 있던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국회법에 있는 내용들을 차용해서 당연직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서 잘 몰랐던 내용이나 아니면 규정이 없더라도 의장의 재량으로 잘 해왔던 내용들이 명문화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이나 의사일정의 변경, 소집, 공고, 안건의 발의, 제출, 상정, 회부, 동의, 철회, 재심의, 일사부재의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도 회의를 해보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세칙에서도 보셨을 내용들이 텐데 이런 내용들 체계를 정비해서 체계와 자구를 정비해서 전부개정세칙안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록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회의록에 기재돼야 된 내용들이 지금 17개로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괜히 법만 만들어서 burden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효력 이 내용 다 들어가있고 여기보면 발언 보충서, 서면 질문과 답변서처럼 통상적인 회의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경우 내용들도 있어서 최대한 많은 범위를 포괄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의원이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해서 문서를 한 20페이지를 만들어 냈는데 이걸 회의록에 신고자 했을 때 실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문서의 게재, 4구의 정정과 이해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의 질서와 경호 관련 내용이고 국회법에 있는 내용 차용에서 넘어 나왔고 보칙이 중요한데 이 내용은 회의 진행 규칙에 관한 내용이 제86조로 그리고 안건 작성이나 제출에 관한 내용이 제87조로 규정되어서 필요에 따라 관련 내용들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현재 회의 진행 규칙은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부수되는 하위 규칙으로 존재하고 안건 작성에 제출에 관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회의 진행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제87조에 따로 86조를 안 합치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 정도가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에 개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세칙안이어서 전문을 보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혹은 화면으로 송출해 두는 것으로 하고 질문이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입니다. 일단 관행적으로 해왔었던 부분들을 대부분 포함했었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눈에 보이면서 약간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일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

고 싶은 게 이제 청가 및 결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25조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제 청가서 또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저희의 관행이었는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물론 제가 출석이나 결석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결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유서를 제출했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이 돼서요. 이 부분은 어떤 관행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있을까요?

○의장 한정현: 네 해당 내용은 세칙만 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유서는 결석을 하면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결석을 했을 때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결석으로 인한 패널티를 받고자 하지 않을 경우에 타당한 이유를 제출했을 때 그것이 여기 출결 조항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만족하면은, 참고로 출결 기준에 있는 조항은 동아리 하나 세칙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기준을 만족했을 경우에 출결로 인한 패널티를 받지 않았고 이 부분은 기층예산심의에서 기층기구 점수를 매길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출결을 카운트했던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질문의 요지는 결석한다고 사유서를 냈던 적은 없는 것 같다고 하시고 이는 답변을 드리기로는 해당 조문만 봐서 그렇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결석을 했을 때 이제 무조건 사유서를 내서 결석해 내듯이 내는 것이 아니라 결석을 했음에도 결석으로 인한 패널티를 받고자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유서를 제출해서 패널티를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조항이고 이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출결 기준을 출결 점수를 따질 때 행해진 바가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아니요, 왜냐면은 이 문장만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문장만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의결기구

운영세칙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률을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디선가 읽어봐야 되는데 뭐 뭐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의무를 질 때 보통 그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의장 한정현: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주신 바가 맞습니다.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좀 조문이 작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의도에 대해서는 그런 관행이 없었는데 만들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관행에 맞춰서 이제 만들려고 했으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종류를 기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무처럼 규정된 거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이 내용입니다. 사유서를 제출해서 출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인데 하여야 한다고 되어서 마치 의무처럼 제출해야 되는 것처럼 기술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의도가 의무화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기존에서도 의무화해서 시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관련 법률을 차용하다가 기술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의견 더 받고 관련 내용 포함해서 수정 의결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원격영상회의 부분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 제1항에 있는 68조 제1항이랑 제4항에 69조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건가요?

○의장 한정현: 내리면 있지 않나요?

○총학생회장 강동재: 여기 의결기구회칙에 있는 제 68조, 69조 말하는 거 맞나요?

○의장 한정현: 전부개정세칙안에 있는 제68조, 제69조입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러면 제3항에 있는 제4항은 어떤 방안을 의미하는 건가요?

○의장 한정현: 본 항에서 이와 같이 기술했을 때는

같은 조 내에서 항을 말하는 겁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럼 이 제4항에 따른 원격 영상회의시스템이 이 제4항이라는 말이 필요한 말인가요? 아니면

○의장 한정현: 원격영상시스템은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Google Meet나 Zoom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4항에 따른 중앙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원격영상회의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회법에 원격영상회의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차용했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은게 여기 4항에 적혀있는 원격회의영상시스템이 저희 같은 경우는 줌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제4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표결을 실시할 경우에는 줌이 아니라 지금처럼 구글폼즈를 이용하는 것도 다 허용이 되는게 맞나요?

○의장 한정현: 시스템이 단순히 플랫폼 하나를 지칭하지는 않기 때문에 Google Meet로 하면 Google Meet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원격영상시스템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Zoom과 Google Forms 어떻게 보면 카이위키까지 포함될 수 있겠네요. 화면에 송출되는 것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국회에서 원격영상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표결을 따로 쓰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표결기 안 쓴다고 쓴다고 해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에 어긋난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우선 말씀해주신바를 맞다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1항에, 제 9조 제 1항에 있는 학내 주요 일정 행사 등에 저희가 하는 여름학기, 겨울학기 같은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거죠?

○의장 한정현: 네. 맞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국회법에서는 이 부분(학내 주요 행

사·일정)이 빠져있습니다. 학내 주요 행사, 일정이 빠져 있는데 원래 의결기구운영세칙에는 그냥 의장의 판단으로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뭐 여기에(국회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축소하는 것은 쟁점의 사안이 있고 더 나은 운영 방안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단순히 의장의 판단이 아니라 그래도 무언가 원격영상회의의 형태로 개최하는 것에 마땅한 근거가 있도록, 의장이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학내 주요 행사, 일정 등으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문이 없으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제21조 및 제25조에 대한 수정 동의를 제출해서 의결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전에 있었던 나름 좋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 다소 맞지 않게 기술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1조제1항에 '청가서 및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가 봤을 때는 제7조에 출결에 나와있는 이 사유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으면 뭐 사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불이익을 안받는다라고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제출하여야 한다면 들어가는 대상에서 사유서를 빼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에서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최대한 회의 중에 수정안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나중에 의결을 할 때도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자면 '또는 사유서'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가장 괜찮은 방안일 것이라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이 조문에 작성과 관련해가지고 그 참가서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류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 의무화를 한다면 의무화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뭐뭐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사

유서를 빼다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청가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미, 의무가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의원이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대리인을 선임하고자하는 경우가 약간 요런 식으로 그 조건 문항부를 수정해야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한정현: 해당 내용은 제가 규칙하고 같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규칙으로 의무화를 해놓았는데요. 지금 규칙에는 의무가 아닌 것처럼 딱히 서술되어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긴하네요. 그러면 제1항을 통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련 대의원하고 중앙운영위원이 이 부분은 안 겹치니깐 빼고 각각 바꿔야겠네요. '대의원이 전학대회를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는 청가서 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말씀해준 내용을 고려해서 '대의원이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죄송합니다. 관련 내용은 좀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혹시 제안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그러면 '대의원이 전학대회를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경우에는'으로 하면 조건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리과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전체적인 취지는 좋은 것 같구요. 확실하게 그 우리가 어쨌든 개정안의 심의이다 보니깐 이걸 발의안이 아니고 축소심의를 원칙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의장 한정현: 발의안입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발의안이예요?

○의장 한정현: 발의안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발의하고 그 학생회칙과 함께 전학에서 심의할 생각입니다. 회칙은 중운위에서도 심의 가능한데 학생회칙과 연관된 사람이 있어 전학대회에서 얘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 드린대로 수정 의결하는 걸로 진행해도 충분히 괜찮으실까요? 네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21조제1항의 내용 중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25조제1항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중앙운영위원회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참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 동의를 제출합니다. 재청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이나 채팅 등으로 찬성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의 제출자 외 1인 찬성하여 해당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성립된 동의에 따라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내용을 '전학대회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다면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실까요? 별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의 의결에 따라 수정안의 의결에 따라서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은 21조와 제25조의 내용이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질문이나 의견 마저 더 받겠습니다. 24시 08분인데 09분까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4호의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심의안건 제4호 표결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배부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4호에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리인은 표결 참여 불가능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투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표결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4호 재석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 안건 제4호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발의안은 수정하

여 심의의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저희 정족수를 간신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분이라도 더 퇴실하시면 회의가 유회됨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2. 심의안건 제5호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한정현: 마지막 안건입니다. 심의 안건 제5호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안입니다. 소집 공고에는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선 안건과 동일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가에 관한 내용만 새롭게 규칙으로 규정하였고 관련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고 일부 내용들만 국회법을 차용해서 새롭게 추가를 하였습니다.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16조 청가 조항 신설하였고 제17조 청가서 제출 제18조 청가의 허가, 제19조 청가 허가의 통지, 제20조 청가 허가의 시료 등을 추가하였고 부칙으로 시행 계획과 경과조치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그동안 했던 혹은 안내드렸던 내용하고 달라지는 건 없고요. 조금 특이사항은 청가의 시료 같은 경우가 이제 정확히 이러한 케이스인데 청가서를 제출하고 중간에 대리인하고 교체해가지고 중간에 본인 입실하는 경우에 대해서 청가를 했기 때문에 본인 입실을 해도 되냐 못하냐 이거에 대해서 청가 실효 규정을 넣어서 중간에 교체하고 본인 입실해도 문제없도록 확실하게 명문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목적 및 경위 함께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가제도를 차용해서 본회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된 대리인 제도를 명문화하였고요. 대리인의 선임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명문화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들에 대한 커버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등을 차용했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있는 이유도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irregular한 케이스에 대한 커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규칙에 넣는다고 해서 추가적인 burden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의사 진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회의 진행 규칙에 15조까지밖에 없었는데 16조부터 20조까지를 추가했습니다.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중복되는 사안이 많아서 특별히 질문은 없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6호의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심의안건 제5호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개시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사전에 배부드린 전자투표링크로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5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시간 더 필요한 위원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마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5호 표결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심의안건 제5호는 원한대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이상으로 금요일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칙 및 세칙과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관련 안건들을 제안해 주신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분들 그리고 함께 검토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추가적으로 더 발언 요청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폐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발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폐회 성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하신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좀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 폐회 성원 점검 같음하겠습니다. 폐회 성원 점검에서 재석이라고까지 입력하셔야 출결로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에 재석 안 하시면 조퇴로 처리가 되므로 재석해주시기 바라며 새내기학생회에서는 지금 해당 소속 중앙운영위원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재석이 인정되지 않고 조퇴로 처리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그러면 폐회 성원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현재 시각 24시 19분 제2023-14회 중앙운영위원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4:19 폐회)

---

# 결 과

## ● 주요내용

### ○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운영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4호)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5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6호)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출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7호)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 심의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2호) 새내기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3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

-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심의·의결함.

-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8조의2"를 각각 "제39조"로 수정함.

(제4호)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발의안

-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심의·의결함.

- 제21조제1항 중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假書) 또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請假書)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 제25조제1항 중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제5호)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표결결과

안건	재석	찬성	반대	기권	결과	비고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3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운영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4호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5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과대표단 선출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6호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출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7호 활동인증서 발급 제도 개편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심의안건 제1호 중앙집행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16	16	0	0	원안 가결	
심의안건 제2호 새내기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16	16	0	0	원안 가결	
심의안건 제3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	15	14	1	0	수정 가결	
심의안건 제4호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발의안	11	11	0	0	수정 가결	
심의안건 제5호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안	12	12	0	0	원안 가결	

**【표결사항】**

○ 심의안건 제1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6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6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 심의안건 제2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6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6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 심의안건 제3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5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4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새내기학생회 회장 송채빈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반대 중앙운영위원(1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 심의안건 제4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1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1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 심의안건 제5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2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2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의 장	한 정 현	<u>J. H. Han</u>
위 원	강 동 재	<u>강동재</u>
위 원	박 재 익	<u>Jake</u>